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14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복기왕 · 문정복 · 강득구
맹성규 · 조인철 · 안태준
허영 · 정일영 · 윤종균
이개호 · 김남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음.

이에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운항기술기준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항공정비사의 근무·휴식 제한을 법률상 피로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 및 관련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

독 대상 장소·시설을 구체화하여 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 신체검사·적성검사 결과를 각각 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로 인정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연령을 19세로 적용함(안 제3조제1항).
- 나.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피로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고,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른 피로관리 및 관련 기록의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56조)
- 다.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 증명 취소·운항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1조 및 제166조)
- 라. 일정한 자격·경력 및 교육훈련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을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질문 등의 감독권한과 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등 감독대상 장소·시설을 구체화 함(안 제1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 및 제83조제4항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나이는 19세 이상으로 한다.
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제1항제7호 중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를 “항공업

무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 운항관리사의”를 “,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항관리사의”를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를 “승무원,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의”로, “승무시간 등 또는 운항관리사의”를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7호 중 “또는 운항관리사의”를 “,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의”로 한다.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경력 및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한 사람(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전자기록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열람·복사하게 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장”을 “사업장(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은”을 “항공안전감독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검사를”을 “검사 또는 질문을”로, “따라 항공기”를 “따라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기”로 한다.

제13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자
제166조제1항제1호의2 중 “또는 운항관리사의”를 “,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 2028년 5월 28일
3. 제136조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 : 2029년 5월 13일
4.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91조제1항제17호 및 제1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군 항공교통관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모두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과정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단서 신설></u>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 ----- ----- ----- ----- 다만,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 및 제83조 제4항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신설></u>	1.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나이는 19세 이상으로 한다.
<u><신설></u>	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43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 증명 ·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 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의3. (생 략)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 종사

3.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 증명 ·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

1. ~ 6의3. (현행과 같음)

7. -----
---항공업무-----

한 경우

8. ~ 31. (생략)

② ~ ⑥ (생략)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생략)

② (생략)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

8. ~ 31.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의-----
-----.

1. -----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의-----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승무원,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6. (생략)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 49. (생략)

② (생략)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의-----
의-----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

1. ~ 16. (현행과 같음)

17. -----,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18. ~ 4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따른 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경력 및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한 사람(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전자기록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열람·복사하게 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⑨ (생략)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 내야 한다.

1. ~ 11. (생략)

<신설>

12. ~ 39. (생략)

② (생략)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

⑨ (현행과 같음)

제136조(수수료 등)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자

12. ~ 3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

<u>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u> 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 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u>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u> <u>의</u> ----- ----- -----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